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나157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나1571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4 선고 2017가단5150145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

피고,피항소인 1. 부산광역시 기장군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,담당변호사 배경수

2. 부산광역시

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,담당변호사 유일한

변론 종결 2020. 3. 31

판결선 고 2020. 5. 21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가단515014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주위적으로,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. 1. 22. 접수 제8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·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).

나. 피고들은,1) 피고들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(B공원조성)의 도시계획시설에 'T의 성명을 사용하거나, 이를 사용한 기념관을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, 2) 피고들이 위 1)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1일당 1,000,000원씩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위 1의 가항 주위적 청구취지와 나항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위 1의 가항 주위적 청구취지와 나항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주위적 청구와 나항 청구에 대한 판단

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,제2항, 제3항 기재와
같은으로,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다만 제1심 판결 이유의 항목은
첫째 항목(1., 2., 3.)을 둘째 항목(가., 나.,다.)으로,둘째 항목(가.,나. 등)을 셋째 항목 { 1),2)
등} 으로 고친다].

2.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(나무,돌바닥, 장식돌,차고,담 등) 등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기존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였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·수익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·수익권이 원 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·수익 권능의 대세적·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 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취지를 채권적으로 피고 기장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·수익권을 포기 또는 사용승낙 하였다는 취지 로 선택하여 본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기장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 용·수익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 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

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주위적 청 구와 나항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 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유성판사 최 은주판사 정 원

별지